

의안번호	제 2010 - 12 호
의 결	2010. 6. 29.
연 월 일	(제26차 회의)

보 고 안 건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목차

1
1
7
1
11
11
11
12
3
13
14
6
16
16
7
17
17

IV.	기타	19
1.	양형기준 마련 요청	19
2.	내용	19

별첨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II) -사기,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마약류범죄-」 「송유관 도유범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협조 요청」

## 1. 양형기준 시행 관련 보고

#### 1. 사건 접수

○ 8개 범죄 양형기준이 시행에 들어간 2009. 7. 1. 부터 2010. 4. 30. 까지 법원에 접수된 8개 범죄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단일범 내지 동종경합범 ◈

HJ 기 기	범죄군 세부죄명 -		구분		
범죄군	711740	고합	고단	고정	전체
	살인	188	0	0	188
2] ∀J →J	살인미수	290	0	0	290
살인죄	존속살해	17	0	0	17
	존속살해미수	10	0	0	10
뇌물죄	뇌물공여	115	313	9	437
	뇌물수수	74	175	0	249
	부정처사후수뢰	8	5	0	13
	수뢰후부정처사	8	1	0	9
	제3자뇌물교부	8	9	1	18
	제3자뇌물취득	4	5	0	9
	특가법(뇌물)	52	0	0	52
	강간	71	1	0	72
	강간살인	1	0	0	1
	강간상해	80	0	0	80
પ્રો <b>મો</b> ગો	강간치사	1	0	0	1
성범죄	강간치상	215	0	0	215
	강도강간	7	0	0	7
	강제추행	21	203	232	456
	강제추행상해	19	0	0	19

HJ zl 그	게 보고 '마		구분		그님 크게
범죄군	세부죄명	고합	고단	고정	전체
	강제추행치상	77	7	0	84
	미성년자의제강간	6	0	0	6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	0	0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3	20	4	27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63	3	3	269
	성폭법(강간등살인)	3	0	0	3
	성폭법(강간등상해)	68	0	0	68
	성폭법(강간등치상)	82	0	0	82
	성폭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73	20	1	94
	성폭법(절도강간등)	11	0	0	11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158	0	0	158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30	0	0	30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42	1	0	43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7	1	0	8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	0	0	5
	성폭법(특수강간)	191	0	0	191
	성폭법(특수강도강간등)	43	0	0	43
	성폭법(특수강제추행)	12	0	0	12
	성폭법(특수준강간)	53	0	0	53
	아동·청소년성보호(강간등)	54	2	4	60
	준강간	52	0	0	52
	준강간치상	5	0	0	5
	준강제추행	13	60	34	107
	준강제추행치상	2	0	0	2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255	5	28	288

HJ z] 그	게 보고 '마	구분			고] 크기
범죄군	세부죄명	고합	고단	고정	전체
	강도	68	0	0	68
	강도살인	8	0	0	8
	강도상해	372	1	0	373
	강도치사	1	0	0	1
7) F 7)	강도치상	20	0	0	20
강도죄	준강도	46	0	0	46
	준특수강도	7	0	0	7
	특가법(강도)	7	1	0	8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0	0	2
	특수강도	245	6	0	251
	배임	7	414	69	490
	업무상배임	12	204	49	265
회러-베이기	업무상횡령	32	1,285	393	1,710
횡령•배임죄	특경가법(배임)	134	5	0	139
	특경가법(횡령)	172	3	0	175
	횡령	19	1,187	528	1,734
	모해위증	0	9	0	9
위증죄	위증	21	948	244	1,213
	위증교사	5	98	6	109
무고죄	무고	15	1,064	381	1,460
下卫刊	특가법(무고)	6	0	0	6
	총계				11,939

## ◈ 이종경합범(8개 범죄가 대표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검거신	세구의성	고합	고단	고정	선세
	살인	89	0		89
살인죄	살인미수	117	1		118
글 한거	존속살해	10	0		10
	존속살해미수	2	0		2
	뇌물공여	73	53	1	127
	뇌물수수	38	46	0	84
	부정처사후수뢰	10	2	0	12
뇌물죄	수뢰후부정처사	12	1	0	13
	제3자뇌물교부	6	7	0	13
	제3자뇌물취득	3	5	0	8
	특가법(뇌물)	43	1	0	44
	강간	93	0	0	93
	강간살인	1	0	0	1
	강간상해	62	0	0	62
	강간치상	85	0	0	85
	강도강간	17	0	0	17
성범죄	강제추행	20	121	93	234
	강제추행상해	7	0	0	7
	강제추행치상	37	1	0	38
	미성년자의제강간	3	0	0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	1	0	3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02	0	0	102

HJ z] 그	범죄군 세부죄명 -		구분		الة [ح
범죄판	세구의병	고합	고단	고정	전체
	성폭법(강간등살인)	6	0	0	6
	성폭법(강간등상해)	52	1	0	53
	성폭법(강간등치상)	62	0	0	62
	성폭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2	0	0	12
	성폭법(절도강간등)	12	0	0	12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99	0	0	99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43	0	0	43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8	1	0	29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0	0	1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7	0	0	7
	성폭법(특수강간)	131	0	0	131
	성폭법(특수강도강간등)	146	0	0	146
	성폭법(특수강제추행)	16	0	0	16
	성폭법(특수준강간)	28	0	0	28
	아동·청소년성보호(강간등)	22	0	0	22
	준강간	17	0	0	17
	준강간치상	1	0	0	1
	준강제추행	2	17	1	20
	준강제추행치상	2	0	0	2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101	1	4	106
	강도	90	7		97
	강도살인	26	0		26
강도죄	강도상해	332	4		336
	강도치사	3	0		3
	강도치상	25	0		25

버지그	게 보 지 대		구분		
범죄군	세부죄명	고합	고단	고정	전체
	준강도	34	0		34
	준특수강도	3	0		3
	특가법(강도)	6	0		6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9	0		9
	특강법(특수강도)	2	0		2
	특수강도	291	5		296
	배임	6	81	3	90
	업무상배임	26	162	14	202
취과 메이기	업무상횡령	58	541	73	672
횡령•배임죄	특경가법(배임)	101	4	0	105
	특경가법(횡령)	158	3	0	161
	횡령	20	453	82	555
	모해위증	0	6	0	6
위증죄	위증	7	73	3	83
	위증교사	2	7	0	9
	무고	16	239	54	309
무고죄	특가법(무고)	5	0	0	5
					5,012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 준이 적용될 사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 2. 처리 현황

○ 2009.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8개 범죄 사건(단일범, 경합범)으로 서 2010. 4. 30. 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 범죄군별 처리건수

			사건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신세
살인죄	수	484	0	0	484
글 한거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죄	수	185	283	5	473
거칠거 	비율	39.1%	59.8%	1.1%	100.0%
성범죄	수	1,878	210	149	2,237
78 담 의	비율	84.0%	9.4%	6.7%	100.0%
강도죄	수	1,081	1	0	1,082
· 경도되	비율	99.9%	0.1%	0.0%	100.0%
횡령•배임죄	수	282	2,248	561	3,091
영영·메급되	비율	9.1%	72.7%	18.1%	100.0%
위증죄	수	33	712	99	844
मुङ्म	비율	3.9%	84.4%	11.7%	100.0%
무고죄	수	16	634	179	829
十二円	비율	1.9%	76.5%	21.6%	100.0%
전체	수	3,959	4,088	993	9,040
선색	비율	43.8%	45.2%	11.0%	100.0%

## ☞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범죄군	세부죄명	전체
	살인	195
	살인미수	265
살인죄	존속살해	16
	존속살해미수	8
	전체	484
	뇌물공여	257
	뇌물수수	131
	부정처사후수뢰	7
뇌물죄	수뢰후부정처사	11
거돌거	제3자뇌물교부	16
	제3자뇌물취득	15
	특가법(뇌물)	36
	전체	473
	강간	81
	강간살인	1
	강간상해	102
	강간치상	210
	강도강간	14
2) 2)	강제추행	288
성범죄	강제추행상해	20
	강제추행치상	69
	미성년자의제강간	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8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49
	성폭법(강간등살인)	4

범죄군	세부죄명	전체
	성폭법(강간등상해)	72
	성폭법(강간등치상)	97
	성폭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64
	성폭법(절도강간등)	19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197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46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51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5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6
	성폭법(특수강간)	159
	성폭법(특수강도강간등)	125
	성폭법(특수강제추행)	17
	성폭법(특수준강간)	38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27
	준강간	21
	준강간치상	5
	준강제추행	68
	준강제추행치상	3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156
	투수강제추행	1
	전체	2,237
	강도	123
	강도살인	18
강도죄	강도상해	442
011	강도치사	4
	강도치상	42
	준강도	73

범죄군	세부죄명	전체
	준특수강도	9
	특가법(강도)	9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8
	특강법(특수강도)	1
	특수강도	353
	전체	1,082
	배임	285
	업무상배임	169
	업무상횡령	1,284
횡령배임죄	특경가법(배임)	67
	특경가법(횡령)	118
	횡령	1,168
	전체	3,091
위증죄	모해위증	5
	위증	698
	위증교사	141
	전체	844
	무고	824
무고죄	특가법(무고)	5
	전체	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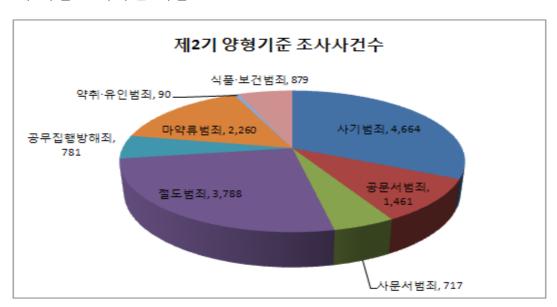
## II.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최종 분석 보고

#### 1. 개요

-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중 공문서, 절도, 식품·보건, 약취·유 인범죄에 대한 분석결과 보고(위원회 제25차 회의)에 이어 사기, 사 문서, 공무집행방해, 마약류범죄에 대한 분석결과를 추가 보고함
- 2004. 3. 1.부터 2008. 12. 31.까지 판결 선고된 사건들 중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는 14,640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및 분석 작업

#### 2. 분석 대상

- 2007. 11. 19. ~ 2008. 3. 28.까지 조사된 8,875건 및 2010. 2. 22. ~ 2010. 4. 29.까지 조사된 5,765건
- 범죄별 조사사건 비율



#### 3. 분석의 의의

○ 기존의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및 추가 양형자료조사를 통해 대상범

죄의 양형기준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양형자료를 제공

○ 이를 통해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제고하고, 원활한 양형기 준안 연구 진행에 기여

#### 4. 분석 내용

○ 별첨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Ⅱ) -사기, 사문서, 공무집행 방해, 마약류범죄-」과 같음

## Ⅲ.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업무지원

#### 1. 회의 지원

- 운영지원단(기획운영과, 통계분석과)은 소위원회와 전문위원 전체회 의 및 팀별회의의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소위원회 회의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제11차	2010. 5. 31. 14:00	○ 공문서, 절도범죄 양형기준안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소위원회	제12차	2010. 6. 15. 10:00	○ 공문서, 절도범죄 양형기준안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회의	제13차	2010. 6. 23. 09:00	○ 약취·유인,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및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심의
	제14차	2010. 6. 28. 09:00	○ 공문서, 절도, 약취·유인, 식 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 ○ 전문위원 회의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25차	2010. 6. 7. 19:30	<ul><li>공문서범죄 양형기준초안의 쟁점 별 검토</li></ul>
	제26차	2010. 6. 14. 12:40	<ul><li>○ 성범죄 양형기준초안의 쟁점별 검토</li><li>○ 절도범죄 양형기준초안의 쟁점별 검토</li></ul>
	제27차	2010. 6. 21. 13:30	<ul><li>○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초안의 쟁점별 검토</li><li>○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초안의 쟁점별 검토</li></ul>
2팀 회의	제22차	2010. 6. 17. 12:00	○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초안의 쟁점별 검토

#### 2. 통계분석 지원

#### 가. 개요

○ 구체적 양형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 으로써 전문위원단의 효율적인 연구업무를 지원

#### 나. 지원 내역

○ 주무 전문위원의 요청에 따라, 제1기 양형기준 대상사건 운영점검 내용과, 제2기 양형기준 대상사건인 공문서범죄, 절도범죄에 관한 추 가 통계분석자료를 운영지원단 통계분석과 선창민 통계분석실무관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음

#### [1] 공문서범죄

- ▶ 공문서(김현석 전문위원)
- 세부죄명별 평균형량 및 형량분포
- ▶ 공문서(정준화 전문위원)
- 범죄별(공문서 위·변조 등의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등의 경우, 공 문서등 부정행사의 경우) 분류 및 유형별 분류에 따른 사건구분
- 범죄 및 유형별 분류에 의한 형량분포 및 비율
- ▶ 공문서 위조·변조 사건(서봉규 전문위원)
- 유형별 분류에서 2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형량분포 및 평균형량(해당사건 리스트 포함)

#### [2] 절도범죄

- ▶ 절도죄(정준화 전문위원)
- 범죄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누범절도) 분 류 및 유형별 분류에 따른 사건구분
- 범죄 및 유형별 분류에 의한 형량분포 및 비율
- ▶ 상습·누범절도죄(서봉규 전문위원)

- 유형별 분류에서의 2유형에 해당하는 사건리스트
- ▶ 세부죄명 절도죄(이주형 전문위원)
- 전과수(초범, 재범, 3~4범, 5~6범, 7~9범, 10범이상) 및 전과유무에 따른 형량분포
- 절도누범 및 이종누범 유무에 따른 형량분포
- 법원별(지방법원) 형량분포 및 평균형량
- 절도 피해금액별(1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 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억원 이상) 형량분포 및 평균 형량
- 법원·피해금액별 평균형량
- 세부죄명별 형량분포의 상·하한(10%, 15%)에 해당하는 형량범위
- 특가법(절도) 제5조의 4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범죄의 선고형 분포(기수 및 미수 구분)
- 절도죄 분류 및 유형에 따른 일반 양형인자에 대한 형량분포 및 평균형량
- 산림절도와 문화재 절도에 관한 해당사건 리스트
- 전체 사건중에서 소매치기, 날치기, 부축빼기의 절도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에 대한 형량분포 및 평균형량, 형량분포의 상·하한(10%, 15%)의 형량범위

#### [3] 기타

- ▶ 제2기 양형기준 대상사건 전체(이주형 전문위원)
- 전체사건 세부죄명별 형량분포의 상·하한(10%, 15%)에 해당하는 형량범위

## Ⅳ. 양형실무 관련 연구자료 수집 보고

#### 1. 개요

○ 위원회 제25차 회의(2010. 5. 24.)에 이어 추가 수집된 각급법원 양 형실무연구회의 회의자료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보고

#### 2. 수집자료 목록

#### 가. 각급법원 양형실무연구회 연구자료

○ 추가 수집된 각급법원 양형실무연구회의 연구성과물은 다음과 같으 며, 향후 작성될 연구성과물은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임

(2010. 6. 23. 기준)

법 원	회의일	발표주제 및 자료 등	비고
부산고법	2010. 5.31.	<ol> <li>공판중심주의와 증거조사</li> <li>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에 대한 양형 적정화 및 양형기준 적용 실태</li> <li>성범죄 양형의 적정화 방안</li> <li>양형기준의 적용과 위증・무고죄의 양형</li> </ol>	
광주지법	2010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	
창원지법	2010. 5.24.	위증죄와 양형기준제	

####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자료

대상기관	수 집 자 료	비고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의약 안전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1~18)	

## V.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1.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 홈페이지(<a href="http://sc.scourt.go.kr">http://sc.scourt.go.kr</a>)의 '양형위원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의견 보고

#### 2. 접수의견

순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요청 ○ 성범죄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0. 5.24.	- 미국 :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 시행,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 중국 : 14세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 동의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
2		- 대만 :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7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 해 공표(아동복지법)
		- 영국 :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하고,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 제공,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
		- 뉴질랜드 :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 들을 위성추적장치로 감시
		- 독일 :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하는 의무신고 제도 운영,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 외과적 거세 실시

		- 캐나다 :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 일주일에 한번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호르몬 복합물 주입
		- 스위스 :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새법안은 2인 이상의 전문가 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 경 우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종신 구속할 수 있고, 재 감정이나 가석방을 불허
		- 일본 : 일본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방지조 치 대상자 등록부를 만들고 재범방지담당관을 지정해 특별관 리함
3	2010. 5.26.	○ 뇌물범죄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뇌물의 정확한 범위(현금 50만원 포함 여부), 뇌물 회수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수반하는 경우'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무원이 뇌물수수를 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 VI. 기타

## 1. 양형기준 마련 요청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로부터 송유관에 서의 도유행위(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 접 수

#### 2. 내용

○ 별첨「송유관 도유범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협조 요청」과 같음